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6일

선 구



1. 대상자

대 상 자		세대주 성명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 명	생년월일			
한*연	2005. 12. 7.	김*경	2023. 1. 1. ~ 2023. 12. 31.	폐문부재

2. 신청장소 :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3. 공고기간 : 2023. 2. 16. ~ 2023. 3. 3.

4. 공고장소 : 선구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발급안내

- 1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포함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(신분증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2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.
(3.5cm × 4.5cm)
 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,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(문의 ☎ 055-831-5293)